

—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(안)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0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 이 용 태

나. 제안이유

- 매년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규모가 증가됨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상환대책 마련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채 상환기금의 조성(제2조)
 -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,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, 기타 수익금
 - 일반회계,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을 해당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.
- 기금의 용도(제3조)
 -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
- 기금관리·운용의 심의(제5조)
 - 기금관리·운용을 위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.

○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(제6조)

-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 의회에 제출 심의·의결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 지침(행정자치부)
-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
- 지방재정법 제4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경 도

-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신설된 조례안입니다.
- 채무상환 비율이 10%이상 단체는 순세계 잉여금 중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감축 재원으로 우선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채무상환비율 20%이상 채무 우심 단체는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-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타법이나 조례에 상충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